



# H<sub>2</sub> MEET 2022(수소모빌리티+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

참가업체는 H<sub>2</sub> MEET 2022(수소모빌리티+쇼) 전시장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자사부스를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주요일정

- ▶ 전시회 기간 : 2022년 8월 31일(수) ~ 9월 3일(토) 10:00~17:00  
※ 단 토요일은 15:00까지
- ▶ 반입(설치)기간 : 2022년 8월 26일(금) ~ 8월 29일(월) 부스 시공 마감
  - \* 8월 30일(화)은 중장비 진입금지, 소음 유발 작업 금지원칙 하에 간단한 작업만 허용
  - \* 전시품 반입은 8월 30일(화) 15:00까지 가능
  - \* 추가일정 필요시 조직위원회에 사전 문의
- ▶ 반출(철거)기간 : 2022년 9월 3일(토) 15:30 ~ 9월 5일(월) 20:00
  - \* 9월 3일(토) 15:30 ~ 20:00 / 9월 4일(일) ~ 5일(월) 08:00 ~ 20:00

H<sub>2</sub> MEET 조직위원회

# 1. 전시장치 지침

## 1. 기본사항

- 1) 전기, 전화, 인터넷, 압축공기, 조립식 부스, 전시장 통로 카펫, 기타 안내판 설치 등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관련 전시장 기본 장치는 주최자가 설치한다.
- 2) 장치공사 중 전시장 소방시설의 훼손 및 파손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모든 자재는 불연 및 방염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 3) 전시차량, 고가전시물 등의 전시품 반출은 2022년 9월 3일(토)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2022 폐막 30분 후부터 시작할 수 있으나, 부스해체(철거)는 9월 4일(일) 08시부터 가능하다.

## 2. 부스 설계도 제출

- 1) 독립부스 참가업체는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주최자에게 부스의 설계도면을 제출한 후 승인받아야 한다.
- 2) 참가업체가 도면 작성시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과 킨텍스 전시장운영 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는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를 반드시 반영한 후 재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립식부스 참가업체는 주최자가 부스를 공급하므로 도면 제출이 필요 없다.
- 3) 복층 설치업체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구조계산사가 확인한 구조계산서,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및 기타 설비 등의 설치요청 위치가 표기된 부스 설계도면(트러스 도면, 3D도면, 평면도 및 입면도, 축척 1:100) 2부를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주최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4) 복층 미설치 독립부스는 구조계산서를 제외한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및 기타 설비 등의 설치요청 위치가 표기된 부스 설계도면(트러스 도면, 3D도면, 평면도 및 입면도, 축척 1:100) 2부를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주최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5) 주최자에게 제출하는 설계도면의 표지에는 부스번호, 제출업체 및 설계업체가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 6) 참가업체가 장치공사시 당초 주최자에게 제출한 도면과 다르게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등에 대한 인입선 위치변경을 요청할 경우 주최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7) 주최자가 승인한 설계도를 임의 변경하여 시공할 경우 주최자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 3. 보세구역 설치 및 관리

- 1) 주최자는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2022 기간 중 행사장소인 킨텍스를 보세구역으로 설치특허를 승인받아 외국 전시품을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모든 물품은 주최자 또는 세관원의 사전승낙 없이 일체 다른 장소로

- 이동할 수 없다.
- 3) 출품업체가 선호하는 현지 물류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물류회사를 통하여 한국의 항만 및 공항까지 선적할 수 있으나, 보세화물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화물의 한국내 반입·반출을 위한 모든 선적서류를 킨텍스에 등록된 운송통관업체에 인도하여 차후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4) 전시화물(부스장치물 포함)에서 발생한 분실, 손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가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 5) 참가업체는 전시품이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후 전시장까지의 과정,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종료 후 보세창고까지의 과정 동안 적절한 세관절차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여야 한다.

#### 4. 전시품 반입·반출

- 1) 반입 및 반출기간
  - (1) 반입(설치)기간 : 2022년 8월 26일(금) ~ 8월 29일(월) 독립부스 시공 마감
    - \* 8월 30일(화)은 중장비 진입금지, 소음 유발 작업 금지원칙 하에 간단한 작업만 허용
    - \* 추가일정 필요시 조직위원회에 사전 문의
    - \* 전시품 반입은 8월 30일(화) 15:00까지 가능
  - (2) 반출(철거)기간 : 2022년 9월 3일(토) 15:30 ~ 9월 5일(월) 20:00
- 2) 전시품 반입 및 반출기간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단, 9월 3일(토)은 15시 30분부터 20시까지로 한다.
- 3) 작업차량 출입
 

장치 및 철거기간 중 전시품 및 장치물의 반입·반출을 위한 화물차량(트럭, 봉고차 이상)에 한하여 무료로 출입이 가능하며, 작업을 마친 차량은 즉시 출차하여야 한다.
- 4) 해외운송물은 장치기간 개시일(2022년 8월 26일(금)) 이전까지 국내에 도착시켜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출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시품의 반입 및 반출을 할 수 없다. 단, 전시품의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품 반입·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진행 가능하며, 전시품의 반입 및 반출 시간은 08시~09시, 17시 30분~20시이다.
- 6)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에 출품되는 제반 전시화물(부스장치물 포함)은 반입 및 반출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킨텍스에 등록된 운송통관업체를 통해 선적을 진행하여야 한다.
- 7) 반입 및 반출기간에는 참가업체의 담당 책임자가 부스 내에 상주하여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에 안전을 기해야 하며, 주최자는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 8) 전시기간 중에는 어떠한 차량도 전시장 내 진입을 금지한다.

#### 5. 참가업체의 부대시설 및 정규시간외 임차 신청

- 1) 부대시설(전기, 전화, 인터넷 전용선, 압축공기, 급배수) 신청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대시설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부대시설비용을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2) 정규시간외 임차 신청
 

참가업체가 장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전시기간 중 정규 작업시간(08시~20시) 이외의 작업을 필요로 할 경우 [정규시간외 임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3) 부대시설 및 정규시간외 임차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세 별도)

구 분		단가(원)	비 고
전기(/kW)	일 반	70,000	220V단상, 220V삼상, 380V삼상 동일
	24시간용	90,000	
	작업전기	70,000	380V삼상
전화(/대)	국 내	100,000	
	국 제	160,000	
인터넷	인터넷 전용선	200,000	유·무선 동일
압축공기, 급배수(/개소)		200,000	
정규시간외 임차 사용료		600/㎡(1시간)	500㎡ 이상 업체
		300,000(1시간)	500㎡ 미만 업체

## 6. 독립식 부스 일반사항

- 독립부스를 신청한 참가업체는 기본 전시장치를 비롯한 모든 부스장치를 자체부담으로 해야 한다.
- 부스장치 및 철거기간 중 작업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시간이 지연 될 경우에는 사전에 주최자에게 정규시간외 임차 승인을 얻은 후 지연에 따른 비용을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장치업체 선정
  - 전시장의 전체적인 조화와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독립부스 참가업체는 킨텍스에 등록된 장치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주최자가 지정하지 않은 별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참가업체는 사전에 주최자와 협의 후 킨텍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참가업체가 장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용역업체 신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체 선정
  - 독립부스 참가업체는 주최자가 지정하는 전기시설업체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주최자가 지정하지 않은 별도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최자와 협의 후 킨텍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참가업체가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한 경우 [용역업체 신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업체는 한정된 면적과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제작은 가능한 피하고 전시장 내에서는 사전 제작된 부분품을 조립하여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공사설계와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장치물의 높이 제한

구 분	높이제한
전시면적 200㎡ 이상 업체	최대 6.5m
전시면적 100㎡ 이상 ~ 200㎡ 미만 업체	최대 5m
전시면적 100㎡ 미만 업체	최대 4.5m

7) 전시장치 자재 및 설치

- 전시장 내에서는 인화성 물질(기름, 가스 등) 사용이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최자의

허가를 받은 후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2) 전시장 내에서는 페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
- (3) 참가업체의 바닥 파이텍스는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주최자로부터 바닥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 (4) 참가업체의 전시장 바닥이 손상되었거나 접착제 등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바닥 보수 또는 접착제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8) 바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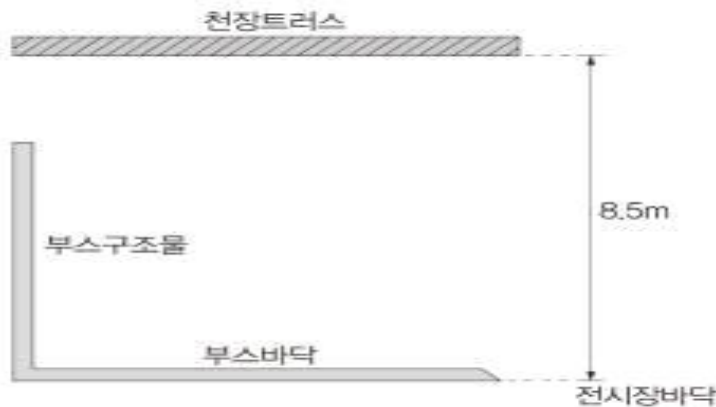
- (1) 전시장 바닥의 하중제한은 5톤/㎡로 한다.
- (2) 바닥공사의 자재는 관람객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바닥공사의 마무리 재료는 참가업체의 재량에 맡기나, 관람객의 안전상 지장이 없으며 마모 등에 의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4) 전시부스의 바닥은 전시장 통로 바닥과 10cm 이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통로 쪽으로 향한 면은 반드시 경사를 완만하게 주어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7. 독립식 부스 구조물 및 부대시설 장치

전시부스 장치는 전시장의 전체적인 조화와 미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인접부스와의 상호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치공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참가업체는 전시장치 지침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동 사항에 위배되어 주최자가 공사의 변경 및 중지를 요청할 경우 참가업체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 7-1. 천장구조물

- 1) 천장에 매달린 리깅 트러스의 높이는 전시장 바닥부터 트러스 밑부분까지 8.5m로 한다.



#### 2) 하중조건

- (1) 킨텍스 메인트러스 수직재 간격 기준으로 9m~9.9m당 리깅 포인트는 1개소로 제한하며, 포인트 당 하중은 500kg 이하이어야 한다. 포인트 1개소당 하중이 300kg 미만인 경우는 9m당 2개소도 가능하나, 하중의 총합은 반드시 50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2) 리깅은 메인트러스의 수직재 절점에서 50cm 이내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리깅 하중은 225kg/point 이하까지 구조검토 없이 허용될 수 있다.(단, 리깅 하중이 225kg/point 이하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3) 리깅하중이 225kg/point 이하라도 수직으로 매달리지 않고 기울여 설치될 때는 횡력에 대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한다.
- (4) 리깅하중의 위치가 트러스 수직재 절점에서 5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에는 225kg/point 이하인 경우에도 국부 굽힘응력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한다.
- (5) 킨텍스 메인트러스 외 구조평면도에 표기된 부재 중 리깅트러스 및 단일 철골형강 등에 리깅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부위에 대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고, 메인트러스 수직재 간격

9m~9.9m당 하중은 최대 50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하중 총합 산정시 반드시 합산하여야 한다.

- (6) 사전 제출된 설치물 이외에는 추가 시공할 수 없으며, 현장 감리시 사전 제출된 하중과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 제출된 하중 이내로 설치물을 수정하여야 한다.

### 3) 리깅 트러스

- (1) 킨텍스에 설치되는 트러스 재질은 반드시 알루미늄 소재계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리깅용 트러스는 290mm x 290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인트 간격과 하중에 의한 트러스 안전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3) 리깅 트러스에 연결되는 부착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조검토가 필요하며, 부착물과 리깅 트러스 연결사항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 내용 및 구체적인 자료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감리시 제출 자료와 시공된 부착물 및 연결 상세가 상이할 경우 시공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현장 보완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4) 리깅 트러스에 연결되는 중량 부착물(제작물)은 철제 구조물을 권장하며, 이에 대한 구조 검토서를 반드시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5) 리깅 트러스에 목구조물을 결합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목구조물은 반드시 경량구조물로 계획되어야 한다.
  - 목구조물을 포함한 리깅포인트별 상세하중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리깅포인트별 하중은 허용지침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며 예외조항은 없다.
  - 목구조제작도(사용목조 재질포함), 연결 상세, 구조검토서 및 화재예방 대책 등을 사전에 주최측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2주일 이전 승인절차 완료)
  - 리깅트러스에 연결된 목구조물과 하부에 지지된 목구조물은 상호 연결할 수 없다.
  - 리깅트러스와 목구조물의 연결재는 반드시 성능인증이 가능한 철물 등으로 연결하여야 하고, 반생이나 플라스틱 타이를 이용한 연결은 현장 적용이 불가하다.
  - 목구조제작도(사용목조 재질포함), 연결상세, 구조검토서 및 화재예방 대책 등을 사전에 주최측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고 (2주일 이전 승인절차 완료)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예외조항 없이 현장 시공이 불가하다.
- (6) 시공자는 현장에서 모든 개소의 리깅 트러스간 접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리깅모터 및 연결재

- (1) 킨텍스 지붕트러스에 하부 설치구조물을 매달 경우 반드시 1톤 이상의 전동모터와 3톤 이상의 성능 인증이 가능한 슬링바를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단, 일부 킨텍스 지붕 트러스(갯워크 구간, 킨텍스 구조도면 참조)에 하부설치 구조물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적 장치(Clamp)를 이용하여야 한다.
- (2) 리깅트러스와 하부 설치구조물 연결시 WIRE ROPE를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제품 성능인증이 가능한 10mm 이상, 인장 내력 500kg/개 이상의 WIRE ROPE(락크 처리된)를 사용하여야 한다.(철근, 케이블 타이 절대 사용금지)
- (3) 트러스에 조명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고정 볼트 이외에 안전 고리 핀을 사용하여 2중 걸이를 해중으로써 2중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낙하 안전 확보)
- (4) 리깅 작업시 연결재로 인해 전시장 지붕층 구조물의 철골 부재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철골 부재 표면 보호를 위해 손상 방지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리깅용 모터는 녹 발생이 된 경우 현장 반입이 불가하고, 견인 벨트는 단면결손이 된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현장에 사용되는 견인 벨트는 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킨텍스 지붕트러스와 하부 설치구조물의 연결 포인트마다 반드시 2중으로 안전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항목은 하중과 무관하며, 하부구조물의 연결부위 손상시 지붕층에 집중 하중으로 인한 손상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가 필요함.)

### 5) 시공시 안전조건

리깅 작업시 작업 하단부에서는 일체 다른 장치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안전요원이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6) 기타

- (1) 리깅 트러스에는 하부 설치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결재의 추가설치가 불가하며, 추가할 경우는 주최자 및 킨텍스 담당자와 협의 후 하부 구조물이 리깅 없이도 안전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설치 가능하다.
- (2) 협의가 되지 않은 구조물 및 상부구조물 연결재 등의 시공이 발각될 경우 주최자와 킨텍스 담당자는 이들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 (3) 현장 감리시 주최자와 킨텍스 담당자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현장 보완시공 또는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7-2. 회전식 무대

- 1) 회전식 무대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하, 좌우 또는 원회전을 하며 움직이는 무대를 말한다.
- 2) 회전식 무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단,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최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회전식 무대의 크기는 전시품 면적의 6배 이내로 하며 전시차량을 포함한 최고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4) 회전식 무대에 전시된 차량은 도어를 연 상태로 전·후, 좌·우에 각 1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 5) 회전식 무대에는 조명기구 이외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7-3. 복층구조물

- 1) 복층 설치업체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구조계산사가 확인한 구조안전서(전시실별 중량제한 확인)와 부스설계도면(트러스 도면, 3D도면, 평면도 및 입면도, 축척 1:100)을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주최자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 2) 복층구조물의 마감을 위한 부재를 리깅할 때에는 안전성 검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주최자와 킨텍스 담당자의 확인 후 설치해야 하며,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 주최자와 킨텍스 담당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 3) 복층의 면적은 사용면적(바닥면적)의  $\frac{1}{3}$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총 높이는 집기, 비품, 광고물 등을 포함하여 본 “1-7. 독립식 부스 구조물 및 부대시설 장치”를 따른다.
- 4) 복층계단의 폭은 1.2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복층 내부에는 보행거리 10m마다 자동 확산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5) 천장 부분을 마감할 경우에는 천장에 10㎡당 1개 이상의 자동 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복층 출입구는 너비가 0.9m 이상으로 대피방향으로 열리게 설치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 7-4. 스피커

1) 소음제한

음량은 공용통로에 면해 있는 부스의 경계선상에서 최고 80dB(A)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특히 인접 전시부스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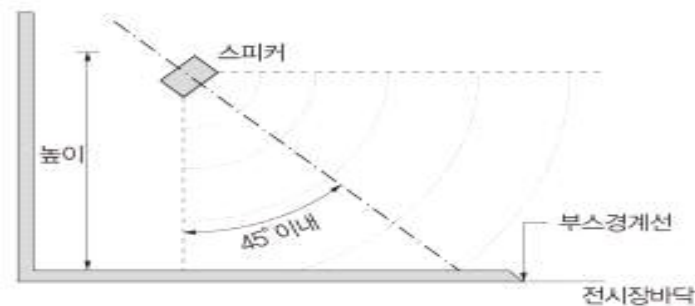
2) 소음제한 위반시 주최자 조치

- (1) 주최자는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기간 동안 소리의 강도를 측정하고 인접부스 참가업체의 이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해당업체에 음압을 낮추게 하거나 스피커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스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
- (2) 소음제한을 위반하여 주최자로부터 2회 경고를 받을 경우 스피커 전원을 차단하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참가업체는 차기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전시면적 및 위치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스피커 사용 신청

스피커를 사용하고자 하는 참가업체는 [참가업체 부스 내 행사 세부계획서]를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계획서에는 스피커 위치 및 음원을 분명하게 언급하여야 하며 스피커 출력이 와트로 표시되어야 한다.

4) 스피커 높이 및 방향



(1) 천장트러스 설치 시

참가업체가 제작한 천장트러스에 스피커를 설치할 경우 스피커는 반드시 자사 부스바닥을 향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2) 천장트러스 미설치 시

스피커의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스피커의 방향은 인접부스를 향하지 않도록 스피커 중심축이 수직선상으로 45° 아래로 향해야 하며, 자사 부스 경계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주최자는 언제라도 소리가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음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5) 무선마이크 사용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참가업체는 사용계획서[별첨서식 6]를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명기하여 기타 참가부스 및 킨텍스 세미나실과의 주파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장 주파수는 900MHz이며 동 무선 마이크 주파수 사용에 대한 조정은 킨텍스와 협의 후 결정키로 한다.

6) 특정시간 소음제한

프레스브리핑 등 특정시간에 개최되는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자는 참가업체에 대해 음향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7-5. 전기



- 1) 전기시설 설치 기본공사는 독립부스의 경우 각 참가업체의 전시부스까지 배선하고 부스 내에 배전반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주최자가 일괄 시공하고, 부스내의 전기공사는 참가업체가 직접 시공한다. 조립식 부스의 경우 주최자가 내선공사 및 조명공사까지 시공한다.
- 2) 공급전력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업체가 전시품 작동을 위해 전압 및 사이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업체 부담으로 변압기 또는 변류기를 설치할 수 있다.

구 분	주파수(Hz)	전기방식 및 전압(V)
전시조명용	60	교류단상 2선식(220)
전시동력용	60	교류단상 2선식(220)
		교류상상 3선식(220)
		교류상상 3선식(380)

- 3) 전시품의 특성상 정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참가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 4) 전기공급은 사전에 신청한 참가업체에 한해 2022년 8월 29일(월)부터 제한적으로 송전이 가능하며, 전시시간 중에만 전시시작 30분전부터 전시종료 30분 후까지 정상 공급한다. 단, 24시간용은 전시시간 중 종일 송전한다.
- 5) 배선용 차단기 및 콘센트 설치의 바닥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높이에 전시품 작동용과 조명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전시품 작동용 모터의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6) 표면온도가 70℃를 초과하는 전열기구를 사용할 시는 안전철책과 함께 20cm 이상의 높이로 된 불연성 자재를 별도로 진열대 위에 설치해야 하며, 전열기구 부근에는 카펫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인접한 벽면은 불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 7)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제품으로 정부가 승인한 KS표시 규격품이어야 하며, 전선은 반드시 규정된 케이블로 사용하여야 한다.
- 8) 국부조명 전력은 1㎡당 100W를 초과할 수 없다.
- 9) 배선공사는 전기용량에 관계없이 600V EV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600V IV전선 및 PVC코드는 사용할 수 없다.
- 10) 220V용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11) 장식용등, 형광등, 백열등 등의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는 화재예방과 관람객 화상예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재료는 불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2) 전등, 저항기 및 기타 발열예상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하여야 하며, 요동하거나 탈착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 13) 가설전기공급  
장치기간 중 기계의 조립, 조정, 시운전과 장치물의 설치, 해체, 철거를 위하여 임시전력을 공급 받고자 하는 참가업체는 주최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14)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기간 중 부스 내 전기관련시설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주최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시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사용은 주최자의 안전검열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 7-6. 조명

- 1) 주최자가 시공하는 조립식 부스의 기본조명은 무료로 전기를 공급한다.
- 2) 옥내전시장의 일반조명은 수은등으로 설비되어 있으며, 평균조도는 400lx다.
- 3) 전시품에 대한 조명 설치는 전시품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참가업체는 관람객의 안전 사고 및 화재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한다.

### 7-7. 전화 · 인터넷

- 1) 전화 설치는 기존시설물에서 참가업체부스까지 가설하고 착발신용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은 유선의 경우 기존시설물에서 참가업체 부스까지 PC에 접속가능한 LAN케이블(UTP)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무선의 경우 킷박스 전시장 무선랜(WIFI)에 접속가능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신청에 따라 국내전화용, 국제전화용, 인터넷 전용선을 구별하여 일괄 시공한다.("1-5. 참가업체의 부대시설 및 정규시간외 임차 신청" 참조)
- 2) 전화기 사용업체는 철거 시 전화기를 필히 반납하여야 하며, 참가업체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분실, 고장 또는 파손했을 경우 변상 또는 복구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 7-8. 급배수 장치

- 1)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요청에 따라 급배수 라인을 전시장 지하공동구의 해당 트렌치에서 참가업체의 전시부스까지 일괄시공하며, 설치규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상수도 수압	공급관 규격	비 고
급 수	초기압 10kg/cm <sup>2</sup> 전시실 말단 부분압력 9kg/cm <sup>2</sup>	ø 15mm	
배 수	-	ø 25mm	

- 2) 단수, 수압저하 등으로 인하여 시운전중인 기계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참가업체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참가업체는 전시시간 종료 후 반드시 단수하여야 한다.

### 7-9. 압축공기 장치

- 1)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요청에 따라 압축공기라인을 전시장 지하공동구의 해당 트렌치에서 참가업체의 전시부스까지 일괄시공하며, 설치규격은 아래와 같다.

최대 사용압력	공급관 규격	비 고
초기압 8kg/cm <sup>2</sup> 전시실 말단 부분압력 7.5kg/cm <sup>2</sup>	ø 9mm	

- 2) 압력저하로 인하여 시운전중인 기계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참가업체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참가업체는 전시시간 종료 후 필히 압축공기 밸브를 잠그고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8. 위험물 취급

- 1) 전시장 내에서의 폭발물, 가연성 물질 및 가연자재의 반입과 사용을 금하며, 위험물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단, 전시품의 실연 및 상담용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 (1) 가솔린, 등유 등의 유류와 프로판 가스 등의 가연성 가스 및 고압가스
  - (2) 보일러, 용광로, 스토브
  - (3) 전기그라인더 등 전동 작업공구
  - (4) 취사용 전열기구
  - (5) 화약류
  - (6) 이외에도 주최자가 화재, 폭발 등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반입은 금지한다.
- 2) 전시용 차량 및 기계의 반입과 시운전을 위해 허용하는 연료는 5ℓ 이내이다.
- 3)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기간 중 부득이하게 화기,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자 하는 참가업체는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화기·위험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제출된 서류는 킨텍스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하며 참가업체는 반드시 주최자 및 킨텍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5) 위험물 취급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 6) 승인을 받은 위험물의 취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 9. 전시자재의 절약과 폐기물 처리

- 1) 참가업체는 전시장에서 사용하는 전시자재에 대해서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립식 시공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전시품은 포장재를 사전 제거한 후 반입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보관하여 철수 시 재활용해야 한다.
- 3) 참가업체는 폐기물의 배출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약 참가업체가 폐기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가 이를 처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일체는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4) 독립부스 참가업체는 시공업체가 폐목자재, 스티로폼, 비닐, 카페트, 유리 등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공업체가 산업폐기물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 홍보물은 가급적 재활용이 가능한 용지를 사용하며, 코팅된 종이류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 10. 의무와 책임

- 1) 참가업체 부스에 설치할 회전식 무대를 포함한 전시대의 크기, 조명기구, 음향기기류의 사용 기준, 마루의 높이나 전시자재의 지정, 기타 각 부문의 시공 및 해체상의 제 규칙은 본 지침 및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을 따른다.
- 2) 장치 및 철거공사 시 전시자재, 장치물 및 전시물 등은 공용면적인 통로에 적재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가 배출한 쓰레기 제거 및 부스 내 청결유지는 전적으로 참가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 3) 장치 및 철거기간 중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로프 등을 반드시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II. 전시 운영지침

### 1. 기본사항

- 1) 참가업체 입장 및 퇴장시간  
참가업체 관리요원은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기간 동안 개장 1시간 전에 입장하여 정시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폐장 후 30분 이내에 일일점검을 완전히 끝내고 소등 후 퇴장하여야 한다.
- 2) 전시장 내부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부스 내에서의 관람객의 안내, 동선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관람객의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최자는 일시적으로 또는 전시기간 중에 참가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4) 전시장 내에 축하 화분 및 화환 반입을 금지한다.
- 5) 참가업체는 전시장 내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다.

### 2. 초대권, 출입증, 주차권 배포

#### 1) 초대권

- (1) 주최자는 아래와 같이 참가업체에 전시면적 크기별로 초대권을 사전에 배포한다.
- (2) 초대권은 모든 전시기간 중 1회 입장이 가능하다.

전시면적(㎡)	초대권(매)	출입증(매)
9~25 (1~2부스)	50	10
26~50 (3~5부스)	100	15
51~75 (6~8부스)	150	20
75~100 (9~11부스)	200	30
101~250 (12~27부스)	300	50
251~400 (28~44부스)	500	80
401~ (45부스 이상)	600	100

#### 2) 출입증

- (1) 주최자는 기자, 참가업체 관계자(참가업체, 용역업체, 도우미), 특별초청자(해외바이어 포함)에게 출입증을 교부한다.
- (2) 참가업체(EXHIBITOR) 출입증
  - 참가업체의 전시장 상주인원(용역업체, 도우미 포함)에 대한 전시기간용 출입증은 전시면적에 따라 해당 수량을 발급한다.
  - 출입증은 전시장 입장 시 제시해야 하며, 참가업체가 출입증을 전시관계자 외의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할 경우 주최자는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전 발급 수량을 초과하여 발급받고자 할 경우, 현장에 출입증 등록대에서 추가 발급한다.
  - 주최자는 참가업체 직원 변경에 따른 출입증 교체 및 추가 발급을 위해 2022년 8월 31일(수)부터 9월 3일(토)까지 현장에 출입증 등록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운영시간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한다.

(3) 해외바이어 출입증

- 전시기간 중 해외바이어는 출입증 등록대에서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한 후, 해외바이어 출입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참가업체가 해외바이어를 초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홈페이지(www.h2meet.com)의 발급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최자에 제출하면 해외바이어 출입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 참가업체 주차권

- (1) 주차권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업체가 직접 킨텍스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031-995-7265)
- (2) 킨텍스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3일 이상 주차 등록 시 일일 최대 12,000원에서 7,000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킨텍스 주차관리규정 따름)

### 3. 참가업체 부스내 홍보 및 이벤트

- 1) 참가업체는 자사부스 내에서만 전시품의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관리요원을 두고 질서정연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2) 참가업체가 배포한 인쇄물, 기념품 등 홍보물은 스스로 수거해야 하며, 주최자는 아래와 같은 홍보행위를 제한한다.
  - (1) 부스 내에서의 무분별한 기념품 배포
  - (2) 전시장 내 통로 기둥에 홍보물 및 포스터 부착
  - (3) 애드벌룬, 비행기구(수소, 헬륨, 공기 포함), 깃발 게양
  - (4) 신용카드, 보험 등 가입권유 활동
  - (5)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행사진행과 운영지침에 반하는 기타 홍보활동
- 3) 참가업체는 타 참가업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 부스 내에서의 설문조사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부스 밖 설문조사는 금지하며, 관람객에게 설문조사를 목적으로 상품견본, 풍선 등 전시에 지장을 주는 기념품 배포를 자제하여야 한다.
- 4) 참가업체는 전시기간 중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타 부스에 방해를 주지 않는 조건하에 자사 부스 내에서 이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참가업체 부스내 행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2022년 7월 15일(금)(연장:2022년 7월 31일(일))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부스 내 행사는 일체 실시할 수 없다.
- 5) 부스 내 행사는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취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접한 부스에 소음, 빛, 연기 등으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과잉된 연출로 타 참가업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만일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접부스의 항의를 받거나 관람객에게 불편을 줄 경우 주최자가 허가한 행사라 하더라도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6) 참가업체의 섭외에 의한 TV 및 라디오 생중계 또는 녹화·녹음 등은 반드시 주최자의 허가를 사전에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 7)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부스 내 행사내용이 주최측에 제출한 계획서와 다를 경우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4. 전시품 실연 및 관리

- 1)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자사부스에서 전시품의 실연을 할 수 있으나, 실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또는 재화의 손상, 화재 또는 통행의 장애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강렬한 음향, 광선, 열기, 먼지, 가스, 냄새, 진동 등의 발생은 허용하지 않는다.

- 2) 전시장 보전, 관리, 질서유지, 공중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주최자는 참가업체에게 이미 허가한 실연이라 할지라도 예방조치 차원에서 실연의 제한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3) 전시장에서는 전시차량의 엔진과 램프를 전시차량에서는 작동시킬 수 없다. 단, 전시대 위에 있는 전시차량의 보조램프는 제외한다.
- 4) 참가업체의 책임 하에 부스내의 전시품 및 관련자재 등을 관리해야 하며, 통로에 전시품을 야적해서는 안 된다.
- 5) 주최자는 전시품과 관련하여 참가업체에서 발생한 손상 또는 도난, 화재 등의 손해에 대해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참가업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전시기간중 추가로 전시품의 진열, 설치 및 교체를 할 수 없으나,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 전시품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시시간 이외에 장내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주최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 5. 상주요원 관리

- 1) 참가업체 관계자는 전시기간 중 반드시 자사 부스에 상주하여 바이어 등 방문객 안내와 전시품의 보전 및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 2) 주최자에게 신고한 참가업체 부스 상주요원이 교체될 경우 주최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주최자에게 제출된 명단 이외의 자는 전시장 내 부스 상주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 3) 상주요원은 전시 중 도난 및 사고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부스 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주최자에게 즉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4) 참가업체의 전시부스 내에서 안내 및 설명하는 자는 관계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니폼 또는 그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명찰(주최자가 지급한 출입증)을 패용해야 한다.

## 6. 전시장내 상담 및 판매

- 1) 참가업체는 전시품에 대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전시품에는 계약된 건수 또는 구매, 계약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표시를 금지한다.
- 2) 용품업체 이외 참가업체가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기간 중이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

## 7. 보험부보

- 1) 참가업체는 장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전 기간(2022. 8. 31. ~ 9. 3.) 중 자사 부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히, 리깅 및 복층구조물을 설치하는 참가업체는 보험가입 증명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참가업체의 과실로 타 업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참가업체에게 있다.

## 8. 지적재산권 보호

- 1)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휘장은 주최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H<sub>2</sub> MEET(수소모빌

리티+쇼) 휘장이란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심볼마크, 포스터 도안 및 명칭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 2)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주최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휘장을 사용하는 업체는 관계 당국에 고발되며,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 3)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주최자에게 신고한 후 사용허가를 득하거나, 주최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4) 주최자는 전시품의 상업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나, 전시품의 디자인 또는 발명품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참가업체는 사전에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 9. 의무와 책임

- 1) 참가업체는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주최자는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진행상 주최자 및 진행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의 경우에만 책임이 있으며, 도난, 참가업체의 실수 또는 기타 유사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
- 3)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에서 사고발생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참가업체의 책임 하에 해결한다.
- 4)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업체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5) 참가업체가 100㎡당 1개의 ABC형(4.5kg)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가 직접 비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6) 참가업체는 주최자가 정한 업무관리 지침 뿐만 아니라, 킨텍스의 전시장 운영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 10. 보충규정

- 1)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은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2022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의 보충규정이 되며, 참가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2) 주최자는 지침의 일부변경이나 첨삭 등 필요한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문서를 통해 관계자에 통지한다.
- 3) 코로나19 등 전시회와 관련한 특수상황 발생 시, 본 지침과 별도로 보충지침은 별도로 주최자가 공지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을 따르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시회 개최시기에 따른 지침을 적용함

## 11. 분쟁의 해결

- 1) 주최자와 참가업체간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2) 본 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자가 규정지을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III. 참가업체 전시관련 주요 일정

주요 업무	일정	비고
부스 설계도면 제출[복층 설치업체 복층도면 포함]	2022. 7. 31(일)	
용역업체(운영업체/장치업체/전기공사업체) 신고	2022. 7. 31(일)	별첨서식 1
부대시설(전기,전화,급배수 등) 신청 및 사용료 납부	2022. 7. 31(일)	온라인신청
출입증 신청서 제출 - 참가업체 상주요원(용역업체 포함), 언론인, 해외바이어	2022. 7. 31(일)	온라인신청
화기·위험물 사용승인 신청	2022. 7. 31(일)	별첨서식 2
초중량물 반입·반출 신고서 제출	2022. 7. 31(일)	별첨서식 3
참가업체 부스내 행사 세부계획서 제출	2022. 7. 31(일)	별첨서식 4
디렉토리 신청(온라인 작성요망)	2022. 7. 31(일)	온라인신청
전시품 반입·반출 신고서 제출	장치·전시·철거기간	별첨서식 5
정규시간외 임차 신청 및 사용료 납부	장치·전시·철거기간	별첨서식 6
장치공사 시작	2022. 8. 26(금) (08:00)	
전기,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등 부대시설 설치 완료	2022. 8. 29(월) (20:00)	행사2일전
장치공사 완료 (부스 시공마감)	2022. 8. 29(월) (20:00)	행사2일전
전시품 반입완료	2022. 8. 30(화) (15:00)	행사전일
전시품, 장치물 시연 및 부스 내 행사 리허설	2022. 8. 30(화) (15:00~20:00)	중장비 진입금지, 소음금지
전시품 반출	2022. 9. 3(토) ~ 9. 5(월) * 9. 3 (15:30~20:00) * 9. 4 ~ 9. 5 (08:00~20:00)	

※ 온라인 신청 방법

H<sub>2</sub> MEET(수소모빌리티+쇼) 홈페이지 접속([www.h2meet.com](http://www.h2meet.com)) → 온라인 참가신청 후 참가신청 확인  
→ 로그인 (ID : 사업자등록번호 / PW : 온라인 참가신청 시 입력) → 양식에 따라 정보 입력

## IV. 전시 관련 주요 일정 및 신청서 양식

---

1. 운영업체/장치업체/전기공사업체 신고서
2. 화기·위험물 사용승인 신청서
3. 초중량물 반입·반출 신고서
4. 참가업체 부스내 행사 세부계획서
5. 전시품 반입·반출 신고서
6. 정규시간외 임차 신청서

<b>용역업체 신고서</b> (운영업체/장치업체/전기공사업체)	제출기한
	2022. 7. 31

■ 신청업체

회사명		부스번호	
담당자	서명      직위		부서

■ 운영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현장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 장치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Tel.
			Fax.
현장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면허허가번호		kinex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기공사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Tel.
			Fax.
현장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면허허가번호		kinex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    년    월    일

참가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별첨서식 1
-------	--	------	--	----	--------

<b>화기·위험물 사용승인 신청서</b>	제출기한
	2022. 7. 31

■ 신청업체

회사명			부스번호	
주 소			대 표 자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 메 일		홈페이지	

■ 사용신청

위험물명	
용량	
사용목적	
방화 및 안전대책	

※ 사양서, 카탈로그 등을 각 2부씩 첨부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참가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별첨서식 2
-------	--	------	--	----	--------

<b>초중량물 반입·반출 신고서</b>	제출기한
	2022. 7. 31

※ 5ton/m<sup>2</sup> 이상의 초중량물에 해당됨. (KINTEX 전시장 하중 : 5ton/m<sup>2</sup>)

■ 신청업체

회사명			부스번호	
주 소			대 표 자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 메 일		홈페이지	

■ 신고내용

일자		품명	중량(톤)	수량	규격	비고
반입	반출					

※ 초중량물 배치도, 하중분포 계획서 등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참가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별첨서식 3
-------	--	------	--	----	--------

# 참가업체 부스내 행사 세부계획서

제출기한

2022. 7. 31

## ■ 신청업체

회사명			부스번호	
주 소			대 표 자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 메 일		홈페이지	

## ■ 세부 행사계획

행 사 명		
행사일정		
소요시간		
행사내용 (스피커 사용 계획서 포함)		
(무선마이크 사용여부 명기 요)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특별출연		

※ 지면이 부족할 경우 상기내용과 같은 별지를 만들어 첨부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참가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별첨서식 4
-------	--	------	--	----	--------

<b>전시품 반입·반출 신고서</b>	제출기한
	장치·전시·철거기간 중 수시

■ 신청업체

회사명			부스번호	
주 소			대 표 자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 메 일		홈페이지	

■ 신고내용

일자		품명	수량	비고
반입	반출			

※ 필요할 경우 상기내용과 같은 별지를 만들어 첨부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참가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별첨서식 5
-------	--	------	--	----	--------



<h1>정규시간외 임차 신청서</h1>	제출기한
	장차·전시·철거기간 중 수시

■ 신청업체

회사명		부스번호	
주 소		대 표 자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 메 일	홈페이지	

■ 작업 신청

(부가세 별도)

기간 및 시간	20 . . . ( : ) ~ 20 . . . ( : ) _____ 시간
사유	
부스면적	

■ 시간외 사용료

구분	단가	시간외 작업시간	총액
500㎡ 이상 업체	600원/㎡ (1시간)	_____ 시간	
500㎡ 미만 업체	300,000원/1시간	_____ 시간	

※ 시간당 30분 초과는 1시간으로 간주하고, 30분 이하는 1시간 사용료의 1/2 적용

20    년    월    일

참가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별첨서식 6
-------	--	------	--	----	--------